

2026년 민간기반 기술진흥 유공 부총리표창 추진계획

1 추진 목적 및 방향

☐ 추진 목적

- 국가산업기술 발전 및 민간중심 기술·협력생태계 구축에 공헌한 자에 발굴·포상함으로써, 자긍심·명예심을 고양하고 사기 진작

☐ 추진 방향

- 포상 후보자를 각계각층에서 폭넓게 발굴하며, 특정단체나 분야에 치우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

2 표창 규모 및 대상

☐ 공적 분야

- 민간기반 기술진흥 유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표창)

☐ 표창 규모 : 총 4점

- 개인 3점, 단체 1점

☐ 표창 추천 대상

- 과학기술 연구·행정·진흥 등 과학기술 발전 및 민간 중심의 기술·협력 생태계 구축에 뛰어난 성과와 업적을 이룬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관계자

※ 추천 시 유의사항 : 특별한 공적(성과)없이 단순히 오랜 기간 성실근무 등의 사유의 추천은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특별한 성과 도출 유공자 우선 추천

3 표창 기준 및 추천제한

□ 자격기준 및 추천제한 (표창 추천 마감일 기준)

구분	자격기준	추천제한
개인 (공무원)	- 실재직기간 3년 이상 - 과기정통부 근속 2년 이상 (실근무기간만 적용)	- 과기정통부 부총리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근속표창 제외) -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견책·감봉)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천가능 (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면 추천불가)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 기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물의를 일으켜 부총리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개인 (일반국민)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 (실근무기간만 적용)	- 과기정통부 부총리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언론보도 등 논란이 있어 부총리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산업재해, 불공정거래, 임금체불 관련 등에 해당되는 자 -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가 예정된 자 -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부총리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부총리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단체 (대외기관, 단체)	- 해당 분야 2년 이상 활동 지속 - 국가와 사회발전, 공익제고 등 공이 큰 기관(단체)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언론보도 등 논란이 있어 부총리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단체 (관서)	해당 분야 우수관서	

※ 타부처 공무원의 경우, 추천일 기준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이고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필요로 함

□ 공통 추천제한 사항

-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기준 준수
-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 제외가 원칙
-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음

- ◇ 추천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표창추천 전에 엄밀히 조사하여 부적격자(추천제한자)가 추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 과기정통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심의 결과, 공적내용이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표창대상에서 제외

□ 추천제한 상세 내용

○ 공무원 표창

- (재표창금지) 추천일 기준, 과기정통부 부총리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추천일 기준,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단, 근속표창을 수여하거나 근속표창 이후 다른 부총리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재표창 금지기간 적용 제외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 중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추천이 가능함

▪ 단, 징계(불문경고) 사유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14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불가

<주요비위>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
- 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8.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9. 성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 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3.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4.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 기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부총리 표창이 부적합한 경우(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갑질 등)
- *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 국민 및 단체 표창

- (재표창금지) 추천일 기준, 과기정통부 부총리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부총리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인하여 제재 중이거나 제재가 예정된 자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제재 중, 제재예정인 자, 제재종료 및 제재해지는 3회 이상으로 등록된 경우 추천 제외
 -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제재정보는 운영지원과(인사팀)에서 일괄 조회
- 아래에 각 내용에 해당되는 자

표창 대상	확인내용	확인방법
법인(단체) 대표, 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붙임1 제한 사항 조회 방법 참조
법인(단체) 대표,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개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4 추천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

□ 제출 서류

- 부총리표창 대상자 명단 [서식1]
- 공적조서 (개인 : [서식2-1] / 단체 : [서식 2-2])
- 부총리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3]
- (공무원)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서식4]
- (타기관 공무원) 추천서
 - 표창추천 공문서(관인 날인) 또는 임의양식의 추천서 등 소속기관장의 표창추천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이어야 함
- (일반국민) 인사기록카드
 - ※ 추천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서류
 - ※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경우 이력서와 함께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제한사항 조회 결과 [붙임1 참조]

공적조서 작성 요령

- 공적요지는 추천후보자의 주된 공적내용을 개조식으로 쉽고 간명하게 작성
 - 공적요지는 육하원칙에 따라 민간 기술진흥 공적을 중점으로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기재하고 ‘~기여함’으로 종결

◆ 공적요지(예시)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공사의 시공책임자(담당자)로 근무하며 △△공법 등 신기술을 도입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0억원)하고, 공기를 단축(0년)하여 적기준공에 기여함

- 주요경력란의 기간과 과거 포상기록란의 포상일자 연월일 표기를 정확히 기재
 - * 과거 포상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
- 공적기간은 공적과 관련된 전체 기간을 합산하되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작성 (7년 6개월인 경우 ‘07년 06월’로 기재)
- 추천훈격란은 ‘부총리표창’으로만 기재하며 조사자는 추천부서장, 추천자는 기관장임
- 서명 또는 관인을 포함하여 이미지(스캔) 또는 PDF파일로 첨부

작성 시 유의사항

-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허위 기재 및 누락, 인사기록카드 사본 위조 및 변조 시에 해당기관이 책임을 짐
- 추천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고, 기일경과로 추천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요청
- 기타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표창 업무지침’에 의함

□ 제출 방법

- 제출기한 : 2026.09.28.(월) 17:00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공문)
 - ※ 원본서류를 스캔한 PDF파일과 작성 원본 한글파일(.hwp) , 엑셀파일(.xlsx) 전부 송부(‘인사기록카드 사본(일반국민 대상자)’ 외 작성 원본파일)
- 제출처 : 한국산업기술연구조합연합회(jisum1576@kfra.net)
 - 담당자 : 박진웅 연구원(044-715-5630)

□ 표창 수여

- 수여 예정일 : 2026.11월 중 ※ 「연구조합 협력융합 R&D 기술교류회」에서 수여
- 수여 장소 및 방법 : 대상자 확정 후 별도 통보

5 추진 일정(안)

- 유공자 표창 대상자 추천 접수 : ‘26.8.26.~9.28.
- 후보자 검토 및 자체 포상추천심의회 : ‘26. 10월
- 과기정통부 공적심사 및 대상자 확정 : ‘26. 10월
- 표창 수여 : ‘26. 11월

◆ 부총리표창 추천 제한사항 중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및 임금체불주 관련 제한사항에 대해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확인해야 함

① 각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공문을 통하여 조회

- 산업재해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3)
- 불공정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044 - 200 - 4127)
- 임금체불주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7)

② 아래의 방법(소관부처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하여 확인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위 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동 시행령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및 동 시행규칙 제8조(공표방법)의 규정에 의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검색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②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검색 및 최근 3년간 게시물 확인

공지사항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전체	공고	행사	입찰	인사	포상대상자공개	기타
----	----	----	----	----	---------	----

총 게시물 : 11건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
11	[공고] 2023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산업안전보건정책과		2023.12.29	2706
10	[공고] 2022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산업안전보건정책과		2023.02.07	6392
9	[공고] 2021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산업안전보건정책과		2021.12.29	10121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의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자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장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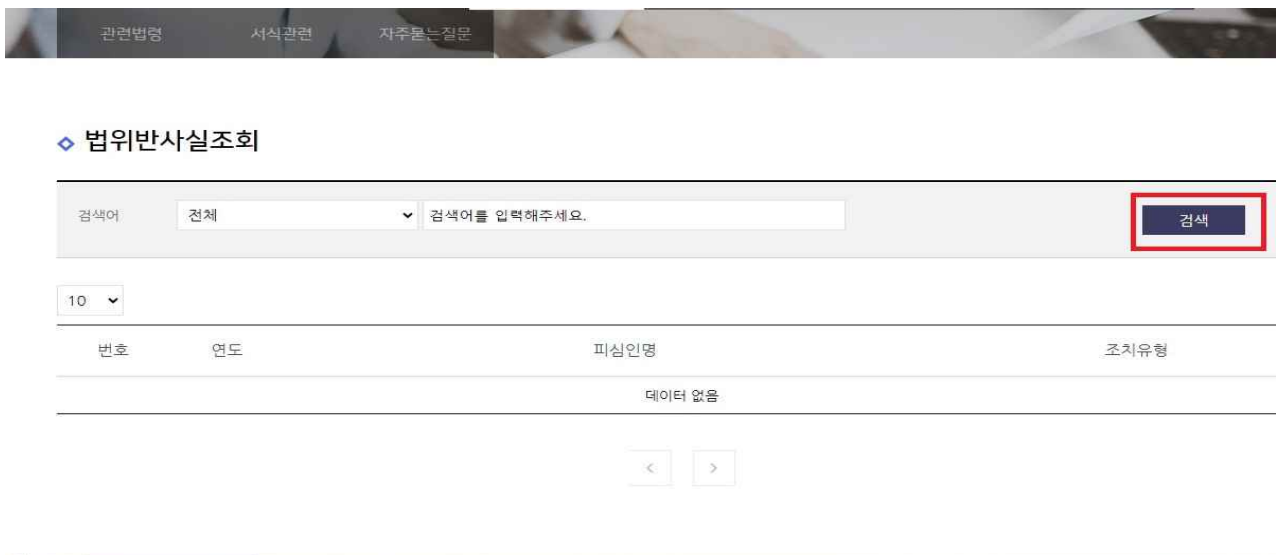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 :

<https://case.ftc.go.kr/ocp/co/violLawList.do>)를 통하여 확인

- 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법위반사실조회

검색어 전체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검색

10

번호	연도	파심인명	조치유형
데이터 없음			

< >

3.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위 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동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기간 등)의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http://www.moel.go.kr/info/defaultler/list.do>)를 통하여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②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③ 공개명단에서 검색하여 확인(최근 3년간)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임금 등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임금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확정, 체불총액 3천만원이상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 * 2021년 1차 명단공개 기간 : 2021.12.31.~2024.12.30.
- * 2022년 1차 명단공개 기간 : 2022.10.27.~2025.10.26.
- * 2023년 1차 명단공개 기간 : 2023.07.13.~2026.07.12.
- * 2023년 2차 명단공개 기간 : 2024.01.04.~2027.01.03.

* 체불액 :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 임금 등

☒ 가나다순 ☐ 고액순

전체

10개씩

전체

지역-전체

업종-전체

검색

중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지(사업주)	소재지(사업장)	체불액(원)
----	----	------	----------	----------	--------

【서식1】

부총리표창 대상자 명단

□ “공적분야”

연번	개인/ 단체*	소 속	직 급	대외직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소 (주민등록지)	성 명	수공 기간	기서훈	공 적 개 요	표창 문안(80자 이하)
1	12	중앙전파 관리소	방송 통신 주사 보	주무관	800100		홍길동	20년 07월	총리("05.12) 장관("07.04)	포상추천 공적분야의 해당 주요공적만 요약 하여 4~5줄 이내로 작 성(수식어 지양, “~에 기여함”으로 문장 종 결)	귀하는 평소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특히, 인터넷 산업 발 전 및 이용환경 개선 정책 수 립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2	10	SK텔레콤	부장	-			성준향				
3	23	(주)응답	-				단체	-	장관("05.06) 장관("03.07)		위는 평소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특히, 인터넷 산업 발 전 및 이용환경 개선 정책 수 립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 작성요령 >

- 서식변경 금지, 소속·직급, 대외직명은 반드시 정식명 기재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 「과기정통부 인사운영규정」 등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 기서훈은 훈·포장, 대통령, 총리, 부총리, 장관으로 구분하여 최근 수상일 순으로 기재(3개 이내)
- * <개인>민간인 10 외국인 11 공무원 12 사립학교 교원 13 타부처공무원 14 // <단체>중앙행정기관 20 지방자치단체 21 공공기관 22 민간단체 23 군부대 24
- 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표창장에 별도 기재하기 어려우므로 내용은 최대한 문안에 포함하며, 아래의 예시형식을 최대한 지킬 것

○ 위 양식을 엑셀로 제출 요망

【서식2-1. 개인용】

(앞쪽)

공 적 조 서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주민등록지)					
직 업			소 속		
직 위		직 급		대외직명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 · 포장 · 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공 적 내 용

【서식2-2. 단체용】

(앞쪽)

공 적 조 서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주 소	※ 단체대표자의 개인주소가 아닌 수상단체의 주소지		
대표자성명			
단체포상 관련 담당자 연락처	(성명) (e-mail)	(직장)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단체 연혁	
연 월 일	연혁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 · 포장 · 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공 적 내 용

부총리표창에 대한 동의서

(부총리표창 후보자용)

□ 부총리표창 후보자

성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부총리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부총리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부총리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부총리표창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 .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부총리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부총리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부총리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19)징계 · 형벌	종 류		일 자		20)과거포상 (장관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1)작성자(인사담당자)					22)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년 월 일 23)기 관 명 : (직인)									

인사기록요약서 작성요령

(1)~(21)란은 인사담당자가 인사기록카드를 보고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의한다.

(1) 란의 “소속기관”은 정부포상 대상자의 소속기관명을 기재한다.

(예시 : ○○광역시 ○○구청, ○○초등학교, 육군○○부대)

(2) 란은 포상대상자의 현재 보직명칭 및 직위를 기재한다.

(예시 : ○○국장, ○○과장, ○○출장소장, ○○초등학교장, 해군 제○○함대장)

(3) 란의 경우 공무원은 직급명칭을 군인은 계급을 기재한다.

(예시 : 교사, 공군원사, 행정주사, 기술서기관)

(4) 란은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되 한자는 반드시 정자(正字)로 기재한다.

(5) 란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대로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6) 란은 현역 군인만 기재한다.

(7) 란은 해당란에 “V”로 표시한다. (기타는 사망자, 임기만료 등 해당)

(8)~(12)란은 근무경력 별로 해당란에 각각 기재한다.

(16) 란은 정무직과 전문직 등을 기재한다.

(17) 란은 재직경력 중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시 제외되는 기간을 기재한다.

(18) 란은 재직자나 퇴직예정 공무원의 실 재직기간을 기재한다.

(19) 란은 징계나 형벌사항을 기재하되 일반사면이 되었거나, 징계기록(불문 경고포함)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징계사유를 명확히 기재한다.

(20) 란은 과거에 표창을 받은 실적이 있으면 수여일자와 같이 기재하되, 특히 최근 3년 이내 정부로부터 받은 포상실적은 모두 기재한다.

(21)~(22) 란은 인사담당자 및 인사담당관이 직급,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3) 란은 인사기록카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의 직인을 날인한다.